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711호(號) 1929년(昭和 4) 5월 18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72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74(號)(조선[朝鮮]·만주[滿洲] 간[間] 발착하물통관취급규칙[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5월 1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6조(條)의2 중국[支那]에 수입(輸入)되는 하물(荷物)이 인도(引渡) 전(前)에 있어서 반환(返還)을 위해 중국[支那]으로부터 재수출(再輸出)되는 경우에 있어서는, 운수기관(運輸機關)은 당해(當該) 하물(荷物)에 대해 이미 지불(支拂)한 중국수입세[支那輸入稅]의 환급수속(還給手續)을 하는 것으로 함. 이 경우에 있어서 하물(荷物)의 반환(返還)이 운수기관(運輸機關)의 귀책(歸責)이 되지 않는 사유(事由)에 기인(基因)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수출(再輸出) 또는 수입세환급(輸入稅還給)에 기인(基因)하는 위험(危險)과 비용(費用)은 이것을 하주(荷主)의 부담(負擔)으로 함.

전항(前項)의 하물(荷物)로서 수입세(輸入稅)를 면제(免除)받은 것일 때, 상표가 없거나[無印] 기타(其他) 운수기관(運數機關)의 귀책(歸責)이 되지 않는 사유(事由)에 의해 운수기관에서 수입세환급(輸入稅還給) 불가능(不可能)으로 인정(認定)된 때 또는 당해(當該) 하물(荷物)의 반환(返還)이 운수기관(運輸機關)의 귀책(歸責)이 되지 않는 사유(事由)에 기인(基因)한 경우에 있어서 환급(還給)해야 할 수입세(輸入稅)와 면제(免除)해야 할 수출세(輸出稅)의 합계액(合計額)이 환급(還給)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액(費用額) 이하인 때 또는 이것과 대차(大差) 없을 때는 수입세환급(輸入稅還給)의 수속(手續)을 하지 아니함으로 함.

수입세(輸入稅)를 지불(支拂)하고 중국[支那]에 수입(輸入)한 외국품(外國品)을 재수출(再輸出)하여 수입세(輸入稅)의 환급(還給)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 수속(手續)을 운수기관(運數機關)에 의탁(依託)함을 득(得)함. 이 경우에 있어서 수입세(輸入稅)의 환급수속(還給手續)에 기인(基因)하는 위험(危險)과 비용(費用)은 이것을 하주(荷主)의 부담(負擔)으로 함.